

#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박진형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779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5년 10월 30일

발 의 자 : 박진형 의원(1명)

찬 성 자 : 최관술, 김상훈, 김정태, 김기대,  
서윤기, 이현찬, 유 용, 신건택,  
서영진, 장우윤 의원(10명)

## 1. 제안이유

- 서울시 택시요금의 소액 결제시 카드수수료를 지원하는 범위를 택시 위법행위 관련 행정처분 대상자 등 일부 운수종사자 및 운수사업자에 대해서 제한하여 조례의 실효성과 택시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

## 2. 주요골자

- 가. 택시요금 10,000원 이하를 교통카드로 결제할 경우 카드수수료의 지원에 관한 범위를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지원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음 (안 제4조제1항)
- 나. 시장은 카드 수수료 지원 및 제외 범위 등의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알려야 함(안 제4조제2항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##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카드 수수료 지원) ①서울특별시장은 택시요금 10,000원 이하를 교통카드로 결제할 경우 그 카드수수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. 다만 택시운송사업자의 시민 서비스 제고를 위해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지원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제외 범위 등의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: 발생요인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호제1항제2호 규정에 해당  
(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)

3. 미첨부 사유

- 일부개정조례안은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제한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므로,  
실제 비용이 소요되지 않음

4. 작성자

- 서울특별시의원 박진형